

석면조사기관(제2013-120007호)

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2018. 0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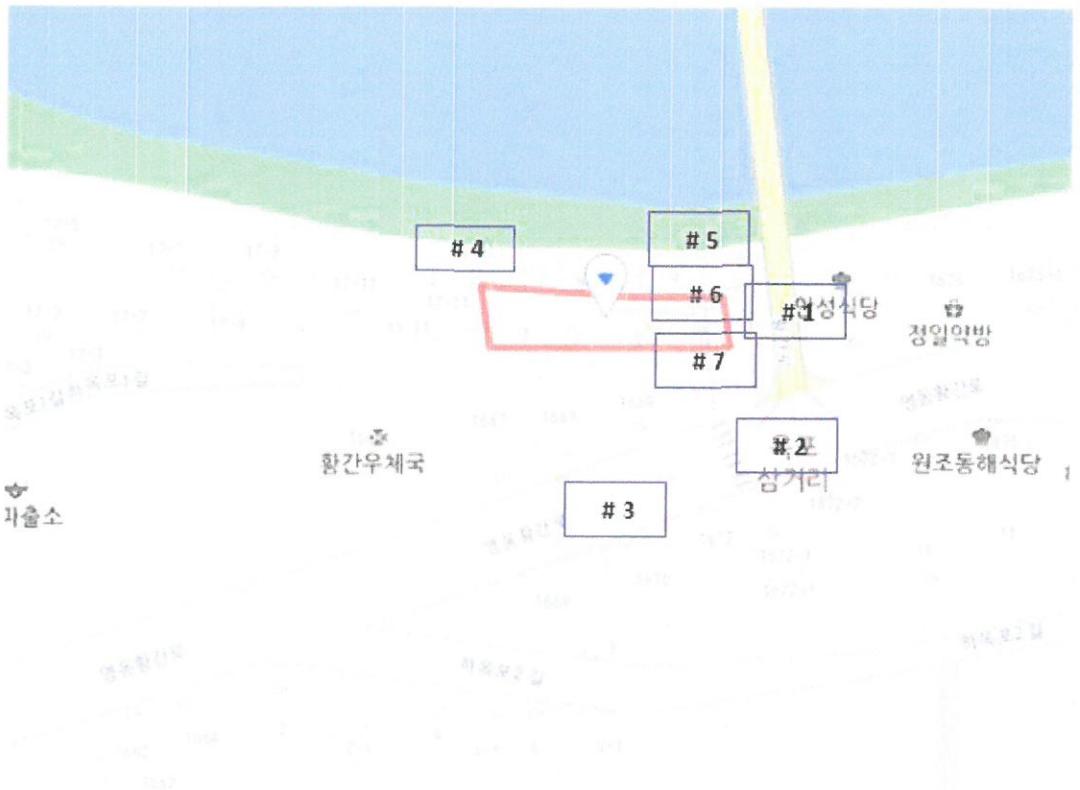


한국환경시험연구원

Korea Environment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

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

#1~4 : 부지경계선
#5 : 위생설비입구
#6 : 폐기물 반출구
#7 : 작업장주변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

2018 04/06 10:04 FAX 0432881398

sanjae

0001

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

신고 번호 청 주-20180103	법장명 (용사명, 작업명)	마산 자연 해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석면폐기물 철거용역	
신고 작업	소재지	충청북도 영동군 화간면 영동황간로 1711 진용이네막창	
	전화번호	--	작업기간 18/01/06~18/09/16
신 고 인	석면해체· 제거업자명	다우건설주식회사	고용노동부 등록번호 4738
	소재지	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1길 26-1 (영동읍)	
	대표자 성명	최승연	전화번호 043-711-6197
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』 제80조의3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대체합니다.			
2018년 4월 6일			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			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3-120007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주식회사한국환경시험연구원
소재지	(139-837)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2길 27 (상계동, 2층)
대표자성명	이용식
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지정사항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
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
	전국

* 준수사항

-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3. 8. 30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

